

연구역량교육소위원회 운영기준

제정 2022. 7. 13.

제1조(목적) 이 운영기준은 [의과대학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 운영규칙]에 의거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 산하 연구역량교육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역량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사항
2. 연구역량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연구역량교육과정 모니터링
4. 그밖에 연구역량교육과정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의과대학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의과대학장의 위촉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③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원의 유고로 후임자가 임명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과대학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보조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회의록 및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기준은 2022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